

남 동 구
구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54호

2020년 8월 7일

금요일

선 람	기관의 장

조 레

○ 조	레 제 1 7 1 0 호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		2
○ 조	레 제 1 7 1 1 호 남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16
○ 조	레 제 1 7 1 2 호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20
○ 조	레 제 1 7 1 3 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4
○ 조	레 제 1 7 1 4 호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		54

회 람								
----------------	--	--	--	--	--	--	--	--

발행 : 남동구

편집 : 대변인실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8월 7일

남동구 조례 제1710호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남동구청장의 권한에 속한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 간소화를 통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로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3.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민간위탁의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와 관련된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8. 그 밖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승인 및 동의) 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위임사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치사무는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로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
4. 민간위탁 시설의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법
8.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수준
2. 재정 부담 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민간위탁 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5. 그 밖에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

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제8조(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민간위탁적격자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 선정 시 적격 여부
2.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끝나면 해산되는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간위탁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계약체결 등)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 내용은 공증을 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의 목적
 2. 수탁기관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하며 개인일 경우에는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3. 민간위탁 사무 명칭 및 그 내용
 4. 민간위탁 기간
 5. 민간위탁 예산 및 운영 지원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및 계약 위반 시의 책임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 표시) ①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3조(사용료 등 징수)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이용자 등으로부터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수탁기관이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하거나, 구 세입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처리지침 등)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교육을 하고 민간위탁 사무처리지침을 전달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점검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에 민간위탁한 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민간위탁 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민간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할 경우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고,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 지표를 개발하게 하거나 직접 성과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② 「남동구 청년미디어타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③ 「남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④ 「남동구 행복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6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

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⑤ 「남동구 공공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⑥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⑦ 「남동구체육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⑧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⑨ 「남동구 인천사랑상품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⑩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⑪ 「남동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⑫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⑬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⑭ 「남동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⑮ 「남동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⑯ 「남동구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⑰ 「남동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⑱ 「남동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⑲ 「남동구 거주외국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⑳ 「남동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㉑ 「남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㉒ 「남동구 영유아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㉓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㉔ 「남동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㉕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㉖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㉗ 「남동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㉘ 「남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㉙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㉚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㉛ 「남동구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사무 운영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수탁기관 선정 후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명 변경
 -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관련 조항 개정(제1조, 제2조)
 - 舊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폐지에 따른 산하기관 용어 삭제 등
-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제4조)
- 민간위탁 사무의 승인·동의 기준 및 지방의회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해야 할 사항 명시(제5조)
-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 수탁자의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조항 정비(제6조, 제7조)
- 민간위탁적격자 심의위원회 수탁기관 선정 심의사항 규정(제8조)
- 계약체결 내용 및 방법 구체화(제11조)
- 사용료 등 징수 조항 마련(제13조)
- 수탁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근거 조항 정비(제15조)
- 수탁기관 성과평가 근거 마련(제16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8월 7일

남동구 조례 제1711호

남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 운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 ① 대행기관의 장인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남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
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 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 등에 공공시설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협의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조성 및 활성화에 현저히 기여한 위원에 대하여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민주평화통일회의의 위탁 사무에 대한 대행기관의 업무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제2조)
- 운영·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제3조)
- 경비 및 인력 등 지원에 관한 사항(제4조, 제5조)
-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제6조)
- 포상에 관한 사항(제7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8월 7일

남동구 조례 제1712호

남동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등)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남동구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른 아동의 안전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아동보호구역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아동보호구역 지정
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 구청장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수행에 따른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 「남동구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 범죄, 유괴·실종, 교통사고 등 아동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아동보호 구역을 지정·운영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제1조 ~ 제2조)
-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에 관한 사항(제4조)
-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제5조)
- 아동보호구역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제6조)
-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제7조)
- 시설물 설치 등에 관한 사항(제8조)
- 관련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제9조)
- 지원 등에 관한 사항(제10조)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8월 7일

남동구 조례 제1713호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외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외에 설치한 주차장을 말한다.
2. “공영주차장”이란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차장으로 구청장이 설치, 관리·운영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3. “공영주차장 관리자”란 구청장과 구청장으로부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라 한다)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주차장에 적용한다.

② 임산부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 본청 및 구 본청 소속기관의 청사
2.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8조의2제1항 및 제15조제2항의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에 대한 4배의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개시 시간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발견 시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징수하고, 이후

계속 주차하는 때에는 계속 주차한 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추가 징수 할 수 있다.

2. 자동차별 주차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서 그 제한시간을 초과하여 주차한 경우 그 초과시간
3.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4. 지정된 주차단위구획 외의 곳에 주차한 경우
5. 공영주차장을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6. 주차구획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③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과 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고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하게 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는 면제)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표지(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사람

라.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2. 1천시시 미만 경형자동차 및 이륜자동차: 100분의 50 감면

3. 요일제 참여 차량: 100분의 50 감면(단, 월 정기주차의 경우 제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주차요금: 면제

가. 모범납세자·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년간

나. 「인천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일

5.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차량을 주차하고 수도권 전철로 환승한 것이 확인된 경우: 100분의 50 감면

6.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자동차 외부에 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다만,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에 영수증 소지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00분의 50 감면
7.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자가운전 차량: 100분의 50 감면(1회 주차의 경우 최초 1시간까지 면제)
8. 전통시장을 이용한 고객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주차장을 이용하고 전통시장에서 발급한 주차권을 소지한 경우: 최초부터 1시간 면제
9. 구 주민등록 거주자 중 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100분의 30 감면, 세 자녀 이상 양육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다만 각각 19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함
10.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임신부가 탑승한 자동차가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발행한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를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11. 「남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100분의 30 감면
12. 공공행사 등 그 밖에 교통질서 유지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이하 감면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

차장의 관리자는 공영주차장 관리·운영계획에 필요한 인원, 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가 관련기준을 충족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장의 표지) ① 공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交通安全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구청장은 이용자들이 공영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표 3에 따른 공영주차장 안내표지와 별표 4에 따른 공영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③ 공영주차장의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를 따른다.

제8조(하역주차구획의 지정)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은 노상주차장 중에서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하역주차구획에서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의 주차를 금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하역을 위한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의 규격에 준한 하역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고, 제한차종·제한구역·제한시간·제한사유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제9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② 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구청장에게 부담하여야 할 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
가. 제1항제1호의 법인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구청장이 정하는 금액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나. 제1항제2호 중 비영리 공익법인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국·공유재산대부료 상당액 중 높은 가액	3개월 단위로 선납
가, 나 이외의 경우	경쟁입찰	입찰가액	3개월 단위로 선납

③ 그 밖에 공영주차장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사무의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의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한다.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제11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상황 등을 참작하여 그 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의 운행과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도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너비 6m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 등을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경찰 또는 소방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 등이 가능하다고 경찰 또는 소방관서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제5호에 따라 인근주민 및 사업체, 근로자의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구간, 이용대상차량, 운영시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획 설치구간에는 전용주차구획 표지판을 설

치하여야 하며, 별표2의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 규정을 따른다.

④ 구청장은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구획을 다른 자동차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 사용신청, 사용자의 선정 등 전용주차구획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제12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별표 5와 같다.

② 부정주차에 대한 가산금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징수하되, 금액은 제1항 주차요금의 4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징수한다.

제14조(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의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하며, “임산부 자동차”란 임산부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③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임산

부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식별이 용이하도록 임산부 자동차 주차안내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하고 바닥면에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⑦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크기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르며, 주차단위구획은 분홍색 실선으로 표시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전용주차구획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⑨ 구청장은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운영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

② 노외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4퍼센트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를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제16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따르되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교부하는 방법
3. 주차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4. 금융기관 등 발급카드에 따른 방법
5. 고지서 등을 발급하는 방법

② 주차요금은 차량이 주차장을 나갈 때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2. 전일주차나 월정기 주차와 같이 정해진 기간·시간 동안 주차하는 자동차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한 경우
2. 주차권을 발행한 후 공영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으로 주차할 수 없게 된 때

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의해 환불한다.

가. 전일주차요금 : 잔여시간에 대한 주차요금

나. 월정기주차요금 : 잔여일수에 대한 주차요금

제17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자동차의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6의 배치기준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부설주차장

제18조(주차장의 설치기준)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서 정한 시설로 하고, 주차장 총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30퍼센트로 한다.

제19조(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제14조를 따른다.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

다)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설치장소 및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를 따른다.

제21조(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인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의 경계선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행정동을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 인천광역시 관할 동

제22조(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시형생활주택 포함, 기숙사는 제외), 오피스텔 중 하나의 용도를 포함하는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기계식주차장으로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기계식주차장은 최소 2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기계식주차장은 법정주차대수의 20퍼센트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23조(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① 법 제19조의13제4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2단식, 다단

식에 한함) 주차대수의 2분의 1(소수점이하 버림)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부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2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① 법 제19조제6항 본문에 따라 노외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공영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공영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단위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노외공영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

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신청한다.

② 구청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표 7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설치비용으로 납부한 금액을 별표 1의 급지부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노외공영주차장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주차장일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유료 노외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요금을 따른다.

③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25조(공공시설 등의 주차장 사용료 징수 및 운영 관리) ① 구청 및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주차장으로서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주차장의 이용에 대하여 제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이용시간, 이용대상 차량, 그 밖에 주차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자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26조(용자 등) ①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요건을 갖추어 용자를 신청할 경우 자격을 심사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산범위에서 주차장 설치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용자의 범위, 신청자의 자격, 용자의 방법 및 상환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보조의 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범위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6조제1항 관련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외에 추가로 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나. 공동주택의 부지내에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다.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인근주민에게 개방할 목적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변경·보안시설 등을 설치하려고 하는 자

제28조(보조금의 지원방법) ①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절차, 보조한도 및 그 밖에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구급고 또는 그 밖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9조(보조금의 반환) ①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2. 의무 유지 및 개방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원금과 보조금 수령일부터 반환일까지 법적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계산하여 함께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보조금(이자포함)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회수한다.

제30조(과징금 처분) ①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기를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가산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차장 및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의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경우

② 건축허가(건축신고, 용도변경 등)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인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

③ 건축허가(건축신고, 용도변경 등)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인허가를 받아 건설 중인 경우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남동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2조의2”를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 및 제27조”로 한다.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

(제4조제1항 관련)

구 분	1회 주차권		전일주차권	월정기주차권
	최초 30분까지	15분당		
1 급 지	1,000원	500원	10,000원	100,000원
2 급 지	600원	300원	6,000원	60,000원
3 급 지	400원	200원	4,000원	40,000원
4 급 지	300원	100원	3,000원	30,000원

< 비 고 >

1. 전일주차권 및 월정기주차권은 노외공영주차장에 한하되, 노상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역실정 및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구청장이 따로 적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급지 구분은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3. 노외공영주차장과 전일주차가 허용되는 노상주차장에 한하여 5시간 이상 주차하는 경우에는 전일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4. 1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표준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점용 구획의 수에 따라 징수한다.

5. 주차요금의 특례

가. 구청장은 인근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 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할증 및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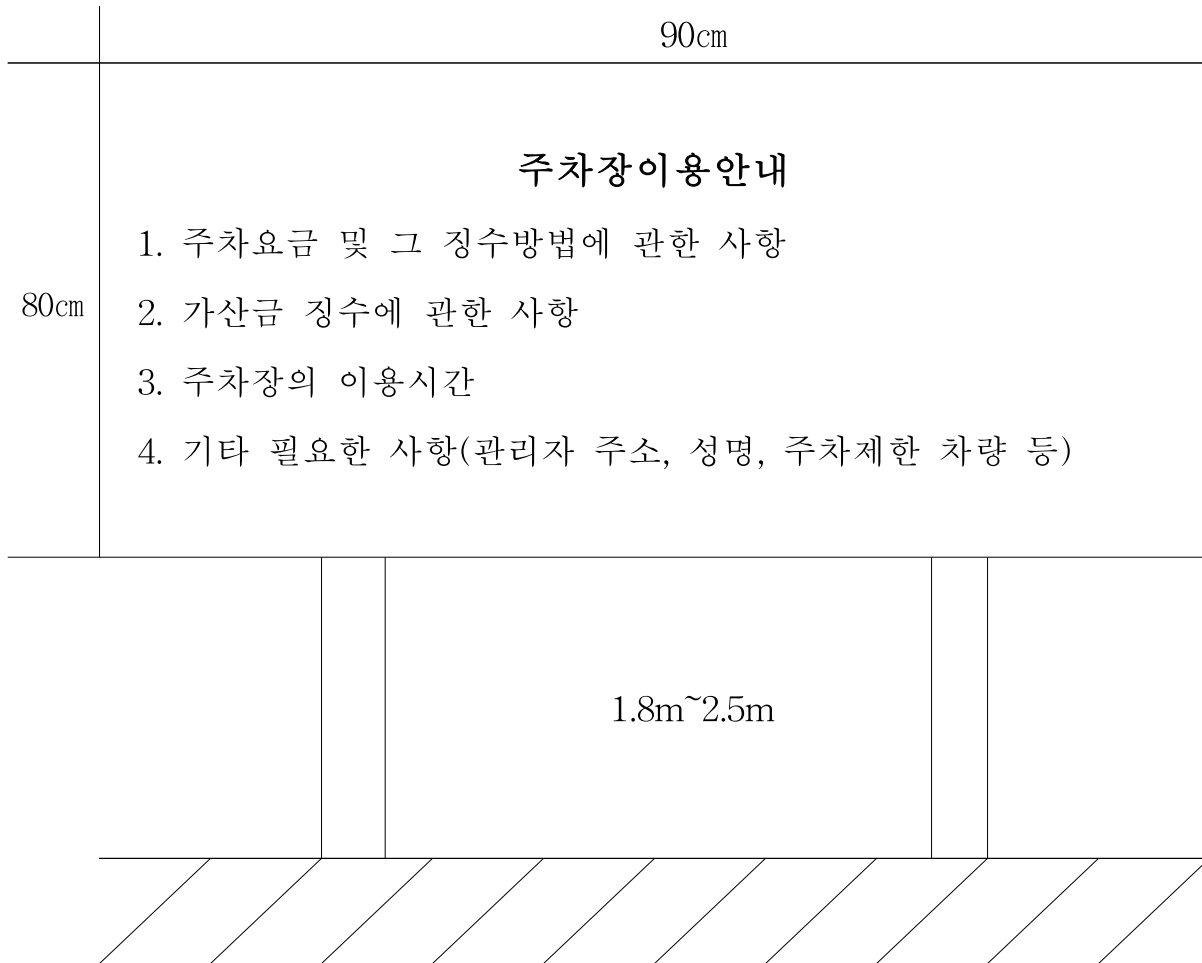
나. 구청장은 월정기 주차권의 경우, 박차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확인된 경우와 월10대이상의 다수계약업소 등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30

퍼센트 범위에서 할인할 수 있다.

다. 구청장은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급지를 구분하지 않고 1급지 전일주차권 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회당 정액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라. 부당주차의 경우는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4조제2항을 따른다.

[별표 2]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표지 (1)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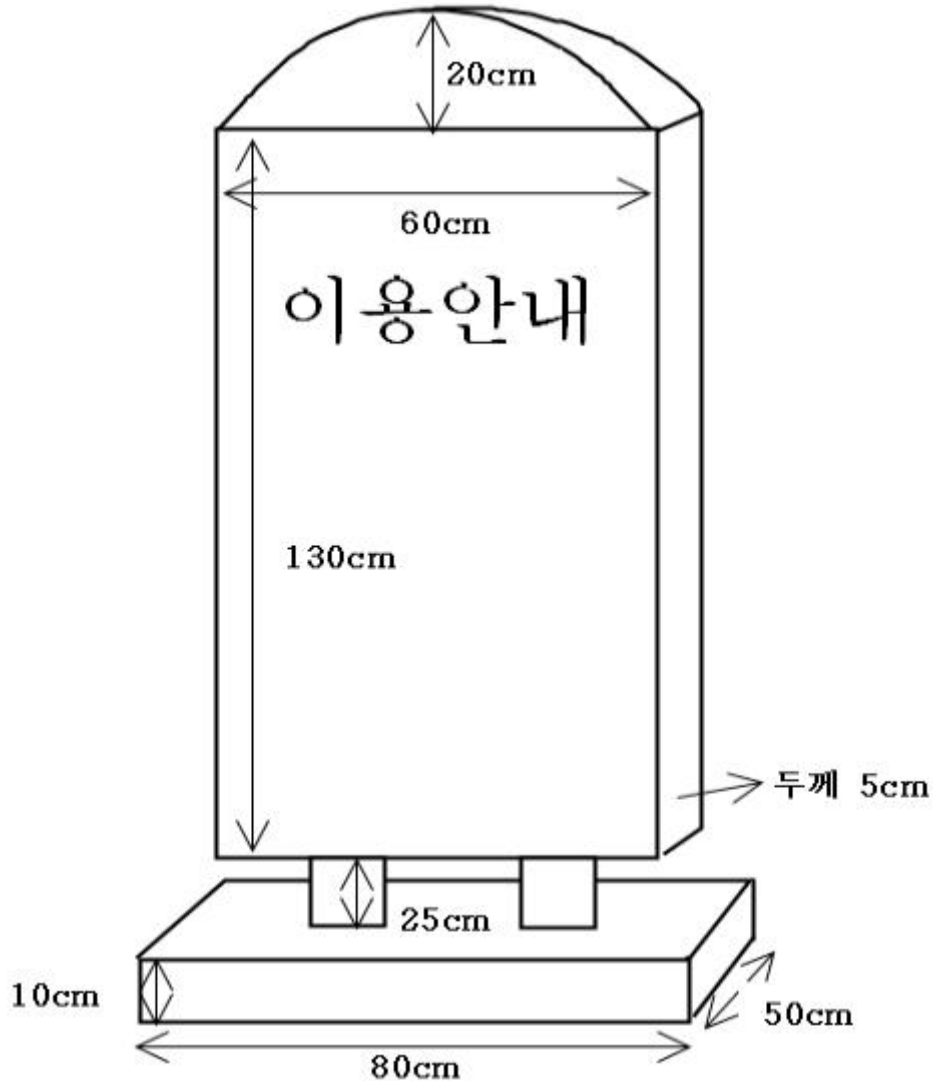


- 비 고 -

구 분	재 료	색 채	
		바 탕	글씨(고딕)
노상주차장	알미늄판	녹 색	흰 색
노외공영주차장	알미늄판	녹 색	흰 색

※ 색채의 기준색, 허용오차는 도로표지에 준함

공영주차장 이용 안내표지 (2)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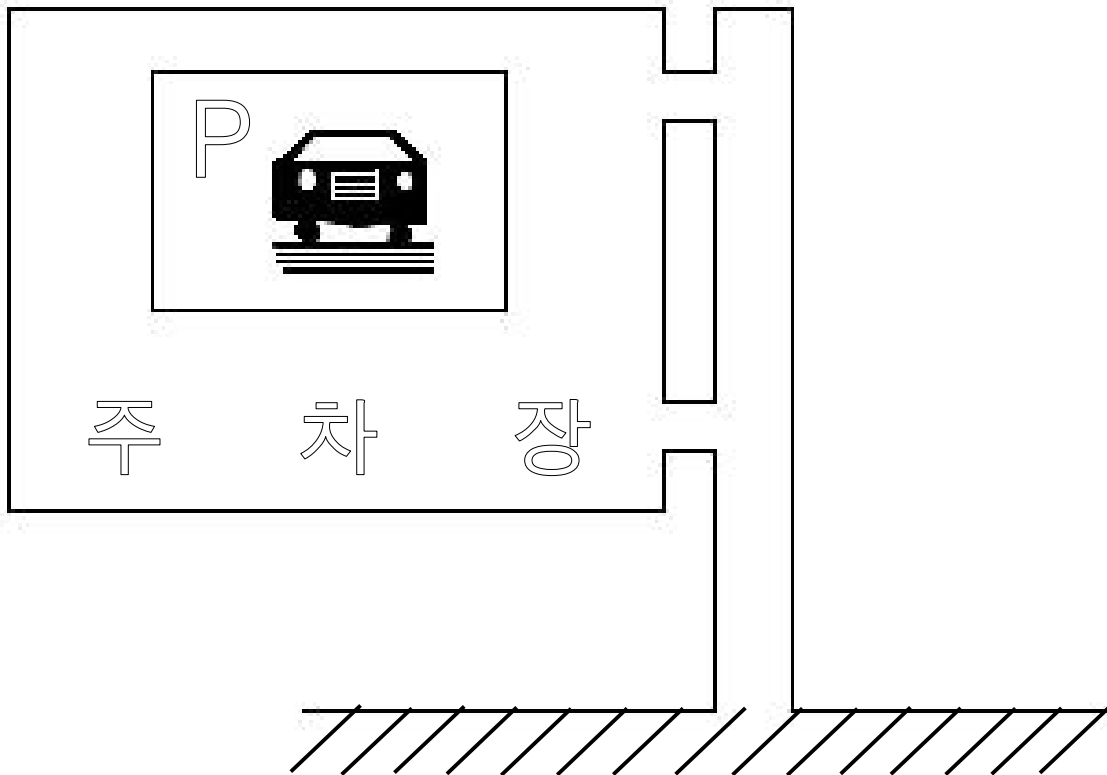


- 재 료 : 스테인레스
- 바 탕 : 청색
- 문 자 : 흰색, 검정색
- 이용 안내 내용
 - 시행지역 안내 및 위반차량의 견인조치 안내
 - 주차요금 및 이용시간
 - 이용자 주의사항
 - 위반차량(부정주차) 신고 안내(동행정보지센터, 구청, 견인차량보관소)
- 설치위치 : 주차장 구간의 시점부와 종점부에 주차장 이용자가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안내표지판 (1), (2) 중 도로 요건을 감안하여 선택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 (1) 또는 (2)를 기본으로 하여 설치한다. 다만, 도로 요건을 감안하여 안내표지의 규격을 달리하여 임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별표 3]

공영 주차장 안내 표지

준제2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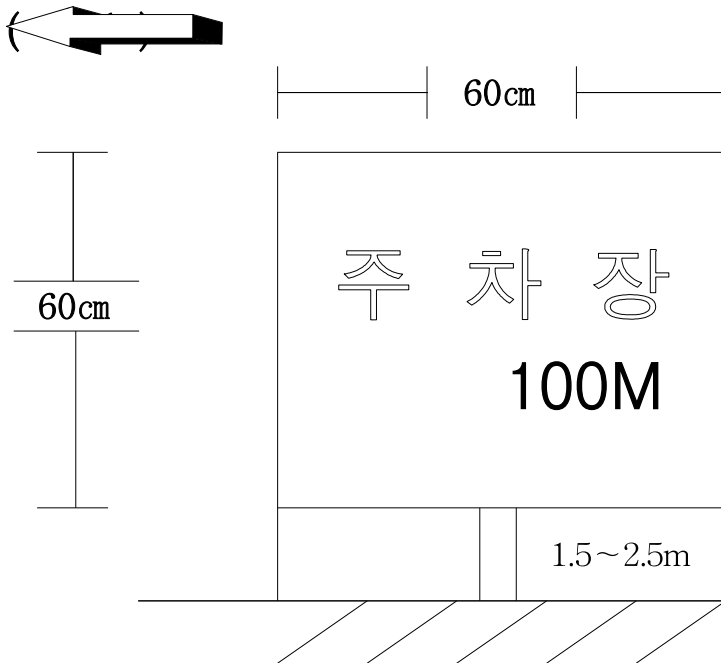


- 비 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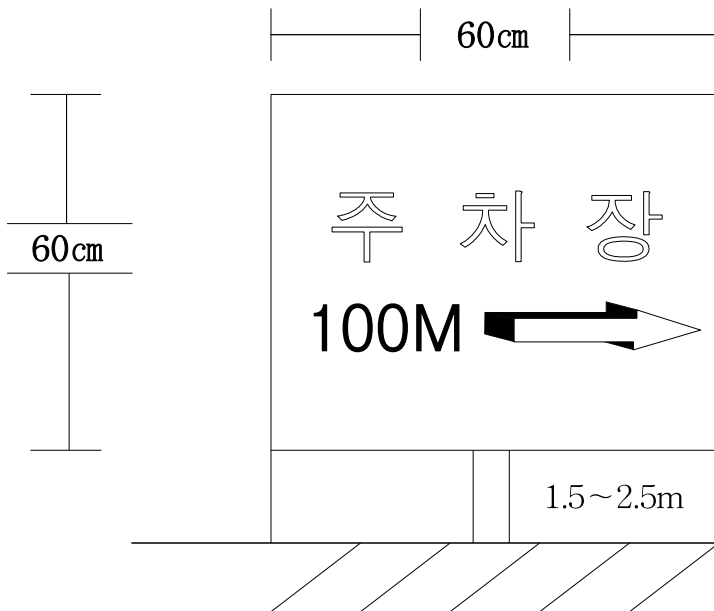
- 재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규격 : 내부표지판(가로 30cm × 세로 25cm)
문 자(가로 17cm × 세로 17cm)
- 색채 : 외부표지판 - 바탕(청색), 문자(흰색)
내부표지판 - 바탕(흰색), 문자 및 기호(청색)
- 야간에 주차장 위치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문자, 기호 등에는 야광테이프 처리를 하여야 함

[별표 4]

공영주차장 위치 안내 표지
(제7조제3항 관련)



(예 2)



- 비 고 -

- 재료 : 알미늄 또는 아크릴
- 색채 : 바탕(청색), 문자 및 기호(흰색)
- 설치위치 : 노외공영주차장으로부터 20m이내로서 주차장 이용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장소(이용 가능한 벽면에 부착할 수 있음)

[별표 5]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표

(제13조제1항 관련)

지역구분	급지구분	전 일 (24시간)	주 간 (08:00~17:00)	야 간 (17:00~익일08:00)
상업지역	1	월100,000원	월60,000원	월50,000원
	2	월60,000원	월40,000원	월30,000원
	3	월40,000원	월30,000원	월20,000원
공업지역	2	월60,000원	월40,000원	월30,000원
	3	월40,000원	월30,000원	월20,000원
주거지역	2	월60,000원	월40,000원	월30,000원
	3	월40,000원	월30,000원	월20,000원
	4	월30,000원	월20,000원	월15,000원

< 비 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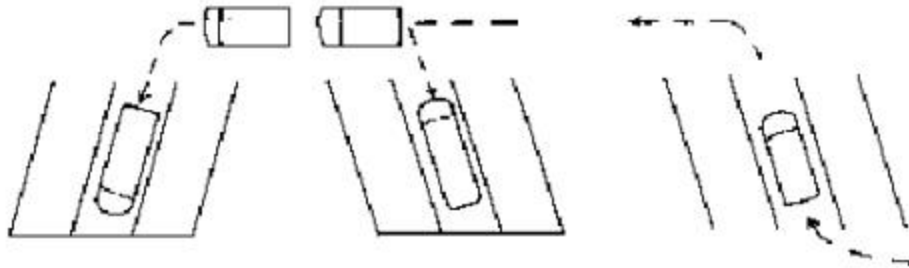
1. 이 주차요금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 및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 적용한다.
2. 전용주차구획 요금은 월정기권으로 하되, 운영실정에 맞추어 월 단위, 분기 단위, 반기별 또는 연 단위로 선납한다.
3. 급지 구분 및 주·야간 운영시간 설정은 해당지역 주차장의 실태 및 주차난을 참작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4. 1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표준기준으로 한다.
5. 사전에 주차장 사용지정을 받은 자가 주차하여야 하는 주차구획에 주차하지 않거나 주차장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 「남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한다.
6.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전용주차구획을 다른 사람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7. 주차요금의 특례

가. 구청장은 인근주차장과 형평성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기 요금을 기준으로 할증 또는 할인할 수 있으며, 할증 및 할인요금은 각 기준요금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할증 및 할인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별표 6]

주차방법 및 배치기준 (제 17조 제 1항 관련)

1. 주차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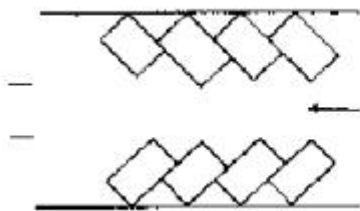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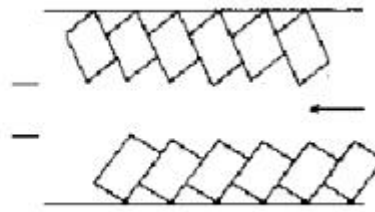
후퇴주차

전진주차 전진발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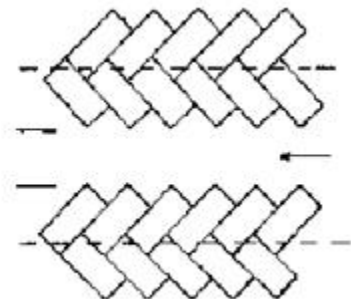
2. 배치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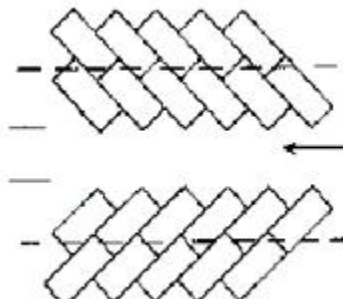
가. 30°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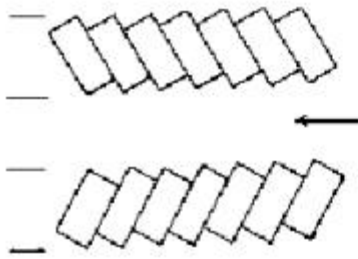
나. 45° 전진주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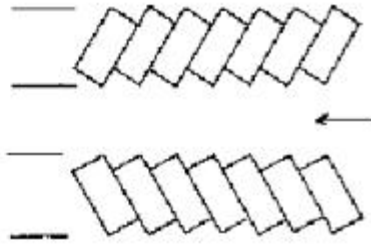
다. 45° 교차주차(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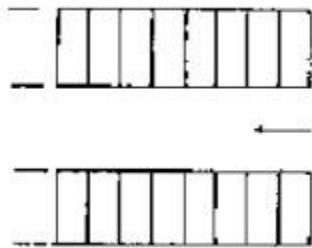
라. 45° 교차주차(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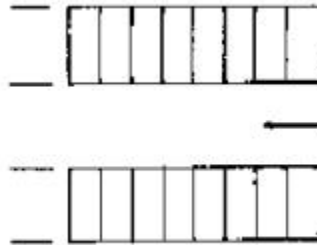
마. 60° 전진주차



바. 60° 후퇴주차



사. 90° 전진주차



아. 90° 후퇴주차

[별표 7]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

(제24조제2항 관련)

(앞면)

공영주차장무상사용증

건축물위치 :

사 용 자 :

사 용 기 간 :

이용주차장 :

남동구청장 (인)

- 비 고 -

· 바탕 : 하늘색

· 글씨 : 검정색

(뒷면)

주 의 사 항

1. 앞면의 기재사항은 임의로 변경 할 수 없습니다.
2. 이 사용증의 분실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이 사용증이 훼손된 경우에는 재교부해 드립니다.

제(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공영주차장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관리 규정 정비 및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가산금 부과기준을 정비하기 위함.
-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사업체와 근로자의 안정적 주차구획 확보를 위한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 조례의 용어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용하는 용어 통일 및 띄어쓰기, 맞춤법, 인용된 법령 등을 수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 조례에 사용된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정의 신설(제2조)
-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정주차 등에 대한 가산금 부과기준 정비(제4조제2항)
- 공영주차장 관리규정 수정(제6조)
-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관리규정 및 위임근거 정비(제12조)
-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규정 정비(제13조)
- 노상주차장 내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 추가(별표 5)

조 례

남동구의회에서 의결된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남 동 구 청 장 이 강 호

2020년 8월 7일

남동구 조례 제1714호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외부장의 등을”를 “사례금을 받는 외부장의 등을”로, “미리”를 “그 외부장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장의 등을”을 “의원의 외부장의 등을”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자문하여야 한다”를 “자문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하는 외부강의 등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의원 외부강의 등 신고 대상 및 시기 개선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2020.4.7. 공포, 2020.5.27. 시행)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정비 : (제27조)